

水質環境保全法 改正(案)

2003. 5

환 경 부

1. 개정이유

폐수 무방류 처리기술과 같이 수계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물을 재이용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일부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되, 이에 의해 무분별한 폐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질정책 확립 추진

이에 따라, 향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시설이 입지할 것에 대비하여 폐수무방류시설의 정의, 설치·운영기준,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을 법제화하여 무방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상수원 상류 등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절차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수무방류시설”이란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처리 또는 공정 내에서 순환·재이용하는 등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6의2호)

나. 상수원 상류 등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설치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방지시설의 처리 효율, 사후 감시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를 예방하고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7조제2항, 제56조의3제1호 및 부칙 제2조)

다.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한 폐수무방류시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고의적 혼합 방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폐수무방류시설설치·운영기준”, 적정 설치 여부 사전 검토,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56조의2제3호)

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도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토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폐수처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확보 및 폐수를 동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바. 법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종전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전량위탁처리 시설이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입지한 시설보다 처벌기준 강화(안 제56조의2제2호)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水質環境保全法

2 6 2

6 2. “ ”

10 2 4 6 8 , 6
(2) ‘第1項 ” “ 1 4 ” , 8 (4) ‘第1項 第3項 ” “ 1 7 ” , 2
4 , 5 .

1 가

’
(“ ”)

2

’ , 28

가

.

3

가

.

4

가

, 가

2

4

.

10

5

,

6

7

9

10

, 10 (7) “地域別 施設” “ ” .

11 1 “第10條第1項 第3項 ” “ 10 1 7 ” , 2 “ ” “ ,

” , 3 “第10條第1項 第3項 ” “ 10 1 6 ” .

11 2 11 3 , 11 2 .

11 2(.) 10 2

.

(“ ”)

.

1

(11 5

.)가 1

가 . 가

.

1.

2.

3.

14 2 “ ” “ ” , “

” “ ,

” .

17 2 .

10 5

.

19 1 “ ” “

2 5

” , ‘第10條第1項 第3項 ’ “ 10 1

7 ” .

20 4 5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가동개시예정일까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5.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모두 철거 한 때

20 2 1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1 1 “第10條第1項 第3項 ” “ 10 1 7 ” .

28 2 “水系別 影響圈域 ” “ ” .

29 3 1 3 .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3 1 “第11條第3項 第20條第1項 第21條第1項 ” “ 11

3 . 11 2 2 . 20 1 21 1 ” .

54 1 “第10條第1項 第3項 ” “ 10 1 7 ” .

56 1 “第10條第1項 第2項 ” “ 10 1 6 ” , 2 “第10條第6項 第7項 ” “ 10 9 10 ” .

56 2 2 3 .

2.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서 제11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11 2 2 1

56 3 .

56 3() 1 3 1

500

1. 10 5

2. 29 1 1

60 3 1 “第10條第2項 第3項 ” “ 10 6 7
”

1 () 6

2 (가) 1

0 2 10 2 5

가 , 10 5

가 .

3 () .

10 2 1 1 “ 10 1 3 ” “ 10 1

7 ” .

31 1 2 “ 10 1 2 ” “ 10 1 ”

16 7 5 “ 10 2 . 3 ” “

10 6 · 7 ” .

.

2 2 “ 15 1 1 29

1 1 ” “ 11 2 2

2 · 3 , 15 1 1 29 1 1

” .

2 5 “ 15 1 1 · 2 ” “

11 2 2 2 · 3 , 15 1 1 · 2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 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第10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폐수무방류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처리 또는 공정내에서 순환·재이용하는 등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7. ~ 9. (현행과 같음)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될 받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폐수 발생공정, 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계획서(이하 “배출시설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수무방류시설을 법제화하기 위해 정의 신설 ○수계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무방류 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등 오염원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허가 절차를 강화

<u><신 설></u>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출시설설치계획서를 오염물질의 유해성,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역별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견을 들어 적합 여부 및 검토의견서를 배출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등 수계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적용하되, 공단내 배출시설과 폐수량 적은 5종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제외
<u><신 설></u>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유효기간을 정하여 붙일 수 있으며, 허가조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o허가시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질오염 방지 대책, 사후 감시 등의 조건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 ----- ----- ----- ----- ----- ----- ----- ----- -----	
③ (생략)	⑦(현행 제3항과 같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 ----- ----- ----- ----- ----- ----- ----- -----	
⑥ (생략)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環境部長官은 地域別 제한대상 施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⑩제9항 ----- ----- ----- ----- ----- -----동 지역의 범위내에서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시설-----	

[illegible]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銷를 命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신설>	③----- ----- ----- ----- -----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 ----- ----- ----- --. ④~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 2(폐수무방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제10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중에서 폐수무방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폐수무방류시설설치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운영자(제11조제5항의 규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과 처벌사항을 규정하여 부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	--

	<u>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u> <u>1. 폐수무방류시설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때</u> <u>2. 폐수무방류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한 때</u> <u>3. 폐수무방류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한 때</u>	
第11條의2(權利・義務의 承繼) ①～③ (생략) 第14條(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 申告를 한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u>기간</u> 이내에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防止施設을 <u>운영하</u>	제11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간</u>내----- ----- -----<u>운영하여</u>	폐수 무방류 시설에 대해서도 일반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하게 가동개시신고 절차 규정

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u>기간</u>이내에는 第16條·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야 하며, 폐수방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수방류시설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기간내-----.	
第17條(操業停止命令) ① (생략) <신설>	제17조(조업정지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제10조에서 정한 허가조건 미이행시 처벌절차 규정
第19條(排出賦課金) ① 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로 인한 水質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1條제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運營機構 代表者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第10條제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제19조(배출부과금) ①----- -----운영기구 대표자, 제25조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規定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o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반면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하고자 함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を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의 種類・算定方法 및 基準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⑧ (생략) 第20條(許可의 取消등) 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10조제1항 내지 제7항----- ----- ----- ----- ----- ----- ----- ②~⑧ (현행과 같음) 第20條(許可의 取消등)-----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한 사업자가 가동개시예정일까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5.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던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모두 철거 한 때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
--	---	---

第20條의2(過徵金 처분) ①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3億원이하의 過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u>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u>을 하는 자에 대하여 <u>제2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u>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u>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u>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u>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폐수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영세한 동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곤란하며, 동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영세사업자는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인·허가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됨
---	--	---

[illegible]

第28條(水質汚染의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① (생략)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系影響圈別 水質管理를 위한 <u>水系別 影響圈域</u>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제28조(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계별 <u>영향권역과 목표수질</u> -----.	
第29條의3(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①전복, 추락등 事故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을 輸送하는 自動車를 通行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그 地域에 隣接한 地域中에서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 道路·區間을 通行할 수 없다.(신설 2000. 1. 21) 1., 2. (생략) 3. <u>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u>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水邊區域	제29조의3(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u> 제4조, <u>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u> 제4조, <u>금강수계물관리및</u>	o낙동강 등 3대강법 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수변구역에서의

4. (생 략) ②~④ (생 략)	<u>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u> 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토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第53條(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u>第11條第3項·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u> 1의2. ~ 5. (생 략)	제53조(청문)----- ----- ----- ----- 1. 제11조제3항·제11조의2제2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 ----- 1의2. ~ 5. (현행과 같음)	
第54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수수료)----- ----- ----- ----- -----	

1. <u>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u>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變更許可 및 申告·變更申告 2. ~ 4. (생략) 第5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u>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u>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詐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u>第10條第6項 및 第7項</u>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하는 地域에서 제한되는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1. <u>제10조제1항 내지 제7항</u>----- ----- ----- 2. ~ 4.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 ----- -----. 1. <u>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u>----- ----- ----- ----- ----- ----- ----- 2. <u>제10조제9항 및 제10항</u>----- ----- ----- ----- -----	
--	---	--

第56條의2(罰則)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4. ~ 9. (생 략) 第56條의3(罰則) 第29條第1 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 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 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	제56조의2(벌 칙) ----- -----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의 規定에 의한 제한지역 에서 제11조제2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 9. (현행과 같음) 제56조의3(벌 칙)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 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0조제5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 시키거나 버린 자	o법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중전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 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위탁시 설과 폐수무방 류시설이 준수 사항 미이행시 처벌 강화 o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위반 시 처벌 조항 규정
---	--	--

第60條(過怠料) ① · ② (생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u>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u> 1의2. ~ 9. (생략) ④ ~ ⑦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제10조제6항 또는 제7항</u>----- ----- 1의2.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	--